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61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이기현 · 조계원 · 김승원
박해철 · 김주영 · 이상식
권향엽 · 민형배 · 김동아
김병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생 략)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후단 신설>	나. ----- ----- ----- -----. <u>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